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인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분	납부내용	납부처
정회원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남	(041)338-4088	(041)338-4188
서울	(02)581-5715~8	(02)523-2284	울산	(052)274-8836	(052)268-8837	전북	(063)251-6040	(063)251-6048
부산	(051)633~6677	(051)634-2966	세종	(044)862-6336	(044)862-6226	전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구	(053)753-8980	(053)756-9049	경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북	(054)859-8170	(054)859-8175
인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원	(033)254-2442	(033)255-2083	경남	(055)246-4530	(055)245-4530
광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건축 시장의 비전을 잠식하는 것들

Things encroaching the vision of construction market of South Korea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어느 나라나 도시 건축의 대부분이 주거용 건축이다. 주거 건축의 형식에 따라 도시 경관이 결정될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 건축은 개인 자산이지만 동시에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의미로 조정되고 통제된다. 우리도 각종 건축 관련 법률로 사회적 공공성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각종 건축 심의나 경관 규정 등이 그런 법률들이다. 물론 이런 법이나 규정들이 얼마만큼 효력과 가치를 확보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축소 또는 폐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문제의 출발점이 정책에 있다. 우리나라 주거 건축(아파트)에서는 OECD 국가들의 주거 건축들이 표현하는 건축적 지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도시 주거 건축을 주도하는 공공건축에서 건축적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애초 공공주거의 공급 비율이 형편없이 낮은 것이 문제다.

우선 우리나라는 공공주거 공급 비율이 OECD국가 중 하위군에 속한다. 2018년 기준으로 겨우 7.1%인데 이는 네덜란드(37.7%)의 1/5에 불과한 수치다. 약 17% 내외인 영국과 프랑스와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주거 건축은 공공주거 건축 정책보다 민간에 의한 의존도가 높다. 주거건축 정책은 철저히 민간시장에 의존한다. 미국이 시행하는 주택 바우처 등의 지원 제도도 전무하다. 소유의 개념으로 주거건축 시장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정책을 산업화 전 과정에 운영해왔다.

특히 정부는 민간 건축 시장을 설계할 때 철저하게 대량 공급과 생산성 극대화 전략으로 접근했다. 수익을 극대화하길 바라는 것은 민간 건축의 특성인데,

정부 택지 개발은 이들의 적정 수익을 보존해주

는 정책으로 진행됐다. 주거(아파트) 건축은 일반 상품으로 기획돼 시장에 제공됐다. 여타 일반 산업과 마찬가지로 주거 건축이 생산과 이익의 도구가 된 것이다.

이것이 한국 주거 건축의 왜곡을 가져왔다. 생산성과 효율성, 수익성의 극

단적인 추구는 입도선매 개념의 선분양 정책을 시작으로 건설사업자들에게 수십 년간 황금 노다지를 안겨줬고, 잘 팔리도록 암묵적인 투기를 유도했다. 소위 말해 부동산 불패시장 구조로 상품 라인을 구축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상품화된 건축 유형은 엉뚱한 모델로 이어졌다. 바로 표준화와 대량생산으로 만들어 무료로 공급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만들어낸 중저밀도 아파트였다. 바다를 건너 탱자가 된다는데, 철학적 출발이 다른 건축 형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선 시장자본주의 최고의 상품으로 둔갑한 것이다.

한국 주거건축 중에서 단지형 아파트 형식은 완전한 투기성 상품의 결정체다. 생산성을 위해 선택된 표준화는 화폐와 같은 빠른 환매 가치로 유통되고 있다. 기업의 경제적 수익을 위해 대량생산 시스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익추구가 극대화되면서 생산 구조는 더욱더 대형화됐고 미숙련 기술자를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생산된 상품의 시가를 버리지 않는 이상 어떤 다양한 정책이 나와도 한국 주거 건축, 특히 아파트는 여전히 주식처럼 등락을 반복하는 가격 구조를 가질 것이다. 가격을 중심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되다 보니 건축적 지향점은 후순위가 된다.

프랑스나 덴마크, 네덜란드 공공 주택의 건축적 지향점과 결과를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차가 난다. 공공 주거 건축의 건축적 표현과 구성은 국내 민간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공동주택보다 월등하다. 국내 주거 건축에서 기업의 경제적 수익을 위한 대량생산 시스템 결과로 건축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건축 없이 생산된 건축 형식이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삭막함, 인간을 경제적 도구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경관, 시장 참여자의 극단적 편중으로 인한 경제적 불균형, 이른바 장인이라 일컫는 기술자들의 소멸, 나아가 미래 한국의 문화 경제적 자원이 될 건축 유산의 폐쇄화까지…….

웃지 못 할 코미디의 백미는 이른바 확장형 발코니다. 물론 이런 설계가 들어오면 나라도 당연히 한다. 합법이니까……. 철저한 투기적 상품으로 바라보는 주거 건축 정책을 내놓으면서 투기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